

第28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23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기상산업진흥법안(계속)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이정선 · 김성태 · 정진섭 · 정미경 · 원희목 · 이윤성 · 권택기 · 박준선 · 이화수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4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구본철 · 권영진 · 김을동 · 김정권 · 노철래 · 박대해 · 박종근 · 배영식 · 서상기 · 서청원 · 안상수 · 안홍준 · 양정례 · 유승민 · 유재중 · 윤석용 · 이명규 · 이병석 · 이진복 · 이진삼 · 이한구 · 이한성 · 이해봉 · 정하균 · 정해걸 · 정희수 · 주성영 · 홍사덕 · 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4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강성천 · 공성진 · 권영세 · 김성수 · 김성태 · 박보환 · 박준선 · 안상수 · 원희목 · 유재중 · 이애주 · 이한성 · 임동규 · 임두성 · 정두언 · 정미경 · 정옥임 · 정태근 · 조윤선 · 주광덕 · 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4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조정식 · 홍희덕 · 양승조 · 김재윤 · 김상희 · 최영희 · 강창일 · 전혜숙 · 박기춘 · 장세환 · 안규백 · 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4
-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7. 소음 · 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윤석용 · 이화수 · 김소남 · 유성엽 · 김희철 · 김성태 · 권경석 · 손범규 · 안상수 · 현기환 · 백성운 · 홍일표 · 양정례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4
- 10.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걸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4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걸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4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걸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4
- 13.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김우남 · 강성천 · 송훈석 · 조진형 · 박순자 · 정진섭 · 신상진 · 박민식 · 이명규 · 정해걸 · 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4
- 1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정해걸 · 박대해 · 진성호 · 김성태 · 강성천 · 이명규 · 정갑윤 · 김성조 · 안형환 · 박민식 · 이진복 · 홍장표 · 송훈석 · 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4
- 15. 기상산업진흥법안(정부 제출)(계속) 4
-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18.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1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김우남 · 강성천 · 송훈석 · 조진형 · 박순자 · 정진섭 · 신상진 · 박민식 · 이명규 · 정해걸 · 정갑윤 · 의원 발의)(계속)	7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경재 · 정갑윤 · 박종희 · 이계진 · 이명규 · 김태원 · 구본철 · 윤석용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7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본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8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본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8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정해걸 · 박대해 · 진성호 · 김성태 · 강성천 · 정갑윤 · 안형환 · 홍장표 · 송훈석 · 김재윤 · 윤석용 · 박준선 · 조원진 · 원희목 · 김태원 · 이경재 · 조해진 · 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8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김영진 · 이진삼 · 이범래 · 김태원 · 김동철 · 원희룡 · 구본철 · 김소남 · 정병국 · 박종희 · 신상진 · 김희철 · 이달곤 · 정양석 · 김재윤 · 박상돈 · 이화수 · 김충조 · 강창일 · 신학용 · 조전혁 · 장광근 · 이성현 · 이윤성 · 조영택 · 윤상현 · 고승덕 · 강명순 · 최인기 · 강성천 · 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8
3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김재균 · 강창일 · 김영진 · 강기정 · 양승조 · 김춘진 · 우윤근 · 주승용 · 전현희 · 이광재 · 백원우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8
3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창일 · 김상희 · 김우남 · 김재균 · 김창수 · 박지원 · 송민순 · 안민석 · 양승조 · 원혜영 · 이광재 · 이미경 · 이용경 · 이용섭 · 조배숙 · 천정배 · 최문순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8
3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유성엽 · 김재윤 · 강기갑 ·곽정숙 · 이정희 · 권영길 · 최문순 · 김성수 · 원혜영 · 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8
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3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박대해 · 박은수 · 전현희 · 문학진 · 변재일 · 이석현 · 양승조 · 안민석 · 김영진 · 최영희 · 천정배 · 송영길 · 홍희덕 · 강기정 · 이용경 · 장세환 · 김재윤 · 안규백 · 이성남 · 이춘석 · 원혜영 · 이정희 · 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8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 · 최구식 · 유재중 · 홍장표 · 안상수 · 강성천 · 손숙미 · 이달곤 · 홍희덕 · 박민식 · 서상기 · 황우여 · 김정훈 · 허태열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8
3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4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

(10시28분 개의) 니다.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

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방건환 입법조사관입니다.

2009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발생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81회 국회 제4차 회의와 제5차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완료한 환경부 소관 15건의 법률안과 제282회 국회 제4차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완료한 노동부 소관 24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등을 3당 간사위원들이 회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환경부 소관의 법률안들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는 노동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이정선·김성태·정진섭·정미경·원희목·이윤성·권택기·박준선·이화수·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구본철·권영진·김을동·김정권·노철래·박대해·박종근·배영식·서상기·서청원·안상수·안홍준·양정례·유승민·유재중·윤석용·이명규·이병석·이진복·이진삼·이한구·이한성·이해봉·정하균·정해걸·정희수·주성영·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강성천·공성진·권영세·김성수·김성태·박보환·박준선·안상수·원희목·유재중·이애주·이한성·임동규·임두성·정두연·정미경·정옥임·정태근·조윤선·주광덕·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조정식·홍희덕·양승조·김재윤·김상희·최영희·강창일·전혜숙·박기춘·장세환·안규백·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윤석용·이화수·김소남·유성엽·김희철·김성태·권경석·손범규·안상수·현기환·백성운·홍일표·양정례·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김우남·강성천·송훈석·조진형·박순자·정진섭·신상진·박민식·이명규·정해걸·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1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정해걸·박대해·진성호·김성태·강성천·이명규·정갑윤·김성조·안형환·박민식·이진복·홍장표·송훈석·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15. 기상산업진흥법안(정부 제출)(계속)

(10시30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기상산업진흥법안,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위원님이신 조해진 위원님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어제 늦게까지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이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강성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명령과 친환경운전 확산규정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의 개정 내용 중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사항을 수용해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고 조원진·강성천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선 의원과 원혜영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2건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역시 대안으로 하기로 하고 폐차 또는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경우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저감장치 등을 반납하도록 하되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제한을 위해서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범위와 지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부과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 중에 운행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영세 화물차주의 피해 우려가 있어 여기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환경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강성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고 정부원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 법안 7건을 심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황사대책위원회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회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 위원회를 대신하게 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종전에 수행토록 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5건의 위원회 정비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가 이를 정비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청 소관의 기상산업진흥법안의 경우에 대체토론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의했습니다.

첫째, 기상예보의 경우 특정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 것을 일반에게도 기상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방하되, 민간업자에게 예보 개방을 할 경우의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부칙에 규정을 추가하여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기상사업자의 경우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또는 기상건설업 이외에 기상장비업도 추가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셋째, 기상사업자가 기상 정보의 제공을 기상청장에게 신청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하여 기상산업의 연구개발, 기상관측장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기상청이 기상예보업무에 전념해서 최대한 예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대체토론 때 면허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소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원안대로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기상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든가 또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사업자의 위법부당한 업무 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토론 때 박대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 제1조의 시행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사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늦은 시간까지 간사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간사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한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15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모두 9건의 법률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로서 간사회의에서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

안 중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2건을 법률안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이 2건을 법률안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상산업진흥법안은 제정법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안은 공청회와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2009년 2월 23일)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상산업진흥법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해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차관님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장관님이 오셔서 인사말씀을 올려야 마땅하나 해외출장 관계로 차관이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안 등 환경부 소관 6개 법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상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을 통해 소음지도, 소음 근거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소음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기반을 마

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을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외대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간 법률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환경부차관님을 비롯한 기상청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노동부 소관의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8.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김우남·강성천·송훈석·조진형·박순자·정진섭·신상진·박민식·이명규·정해걸·정갑윤·의원 발의)(계속)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박종희·이계진·이명규·김태원·구본철·윤석용·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속)
- 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성 의원 대표발의)(이운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본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성 의원 대표발의)(이운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본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정해걸 · 박대해 · 진성호 · 김성태 · 강성천 · 정갑윤 · 안형환 · 홍장표 · 송훈석 · 김재윤 · 윤석용 · 박준선 · 조원진 · 원희목 · 김태원 · 이경재 · 조해진 · 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김영진 · 이진삼 · 이범래 · 김태원 · 김동철 · 원희룡 · 구본철 · 김소남 · 정병국 · 박종희 · 신상진 · 김희철 · 이달곤 · 정양석 · 김재윤 · 박상돈 · 이화수 · 김충조 · 강창일 · 신학용 · 조전혁 · 장광근 · 이성현 · 이운성 · 조영택 · 윤상현 · 고승덕 · 강명순 · 최인기 · 강성천 · 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 3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김재균 · 강창일 · 김영진 · 강기정 · 양승조 · 김춘진 · 우윤근 · 주승용 · 전현희 · 이광재 · 백원우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3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창일 · 김상희 · 김우남 · 김재균 · 김창수 · 박지원 · 송민순 · 안민석 · 양승조 · 원혜영 · 이광재 · 이미경 · 이용경 · 이용섭 · 조배숙 · 천정배 · 최문순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3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유성엽 · 김재윤 · 강기갑 ·곽정숙 · 이정희 · 권영길 · 최문순 · 김성수 · 원혜영 · 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 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박대해 · 박은수 · 전현희 · 문학진 · 변재일 · 이석현 · 양승조 · 안민석 · 김영진 · 최영희 · 천정배 · 송영길 · 홍희덕 · 강기정 · 이용경 · 장세환 · 김재윤 · 안규백 · 이성남 · 이춘석 · 원혜영 · 이정희 · 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 · 최구식 · 유재중 · 홍장표 · 안상수 · 강성천 · 손숙미 · 이달곤 · 홍희덕 · 박민식 · 서상기 · 황우여 · 김정훈 · 허태열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3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59분)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제21항까지 3건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제34항까지 5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36항~제38항까지의 3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40항 청년실업 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민주당 간사이신 김재윤 위원님 나오셔서 노동부 소관 2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서 간사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지난 21일 상정한 노동부 소관 법안 23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제오늘에 걸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등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면서 첫째, 고용기간·장애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탄력적 지급과 관련하여 성 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대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 고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규정의 시행시기는 관련된 다른 위원회들과 함께 모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올해 예정된 의무고용률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 이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고 폐지되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대신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구성 시 동 위원회의 기능·구성을 대통령령에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보험관계 성립 신고기간의 예외 인정,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는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공청회를 개최할 만큼 이해관계가 큰 조항의 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목적에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추가하여 이 법이 근로자와 기업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였고,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을 의무화할 경우 정부 정책 결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임의조항으로 하였으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사업 중 민간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일부 법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화수 의원님과 이윤성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윤성 의원님의 안과 정부안을 절충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노동조합을 규정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로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료의 완화에 대해서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규제만을 완화하고 일반 직업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별로 1명 이상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으로 동거가족의 고용 간주 사항을 반영하되 동 규정의 개정으로 부실 유료 직업소개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안의 제정 경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과태료로 전

환하되 상한액을 높이기로 하는 등 여러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각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화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종전 자체검사만을 수행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설한 민간 지정검사 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급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최철국 의원님, 그리고 저, 홍희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와 홍희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을 만들면서 청년실업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결책들을 담아 보려고 애썼습니다.

첫째,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산·학·관 협력 강화 등 체계적인 청년고용 촉진 정책의 마련 및 집행을 위해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채용의 노력의무 부과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기로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평가 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 채용률을 공기업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제안경위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업애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과 박대해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

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심사 내용은,

첫째, 근로계약의 대행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시 1개월의 출국 요건을 폐지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2년 미만의 기간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의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되 먼저 3년의 범위 안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용의 경우에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보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장 변경 시 구직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윤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원안의 내용을 수용하되 이화수 의원님과 이윤성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니다.

진영 의원님과 강승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법률안은 강승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요내용인 한국사회적기업원의 설립에 대한 정부 계획안이 예산과 조직구성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3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어제 새벽 4시까지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결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9항의 법률안 24건 중 의사일정 제18항을 제외한 23건의 법률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로서 간사회의에서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8항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2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률안들과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우리 청년실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아서 좀더 법적인 조항을 달아서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김재윤 간사님께서 참 뜻을 많이 주셔서 가지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사실은 정부의 방침은 위원회에 많은 조정을 하고 축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법적으로 두는 위원회 부분은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위원회, 사실은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면서 김재윤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해서 이번에 청년실업특별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청년고용촉진법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저는 법만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어쨌든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도 많이 정비되고 그렇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정말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뒷받침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오늘날 청년실업만 보더라도 일반실업의 2배 이상, 지금 현재 나온 통계로 보면 8.8%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냥 실업자만이 아니라 사실 구직을 하기 위한 취업 준비라든가 하는 이런 취약계층을 포함하면 통계상으로 한 100만 명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는 대단히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또 특히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서도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청년취업을 위한 중소기업인턴제라든가 또 취업장려수당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직업훈련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쉽게, 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여러 가지 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 청년은 어떤 다른, 여성과 같이 차별대우를 받아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반적인 고용구조와 그런 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함께 고려하면서 어쨌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이번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해 주신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대안 수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고 또 간사들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대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7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부분인데 거기에 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부분인데 단서조항이 지금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대안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25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1항 4호의 ‘근로조건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를 ‘근로조건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그리고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우리 여야 간사들께서 새벽까지 고생을 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돼 있고 참여를 할 계기가 있었으면 좀 더 내용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청년해소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저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하고, 오늘 우리가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 노동부장관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기본적

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세계 글로벌시대의 경제흐름과 기업들이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어떤 공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간다는가 이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사실은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조직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리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기초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률로 규정을 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런 창구나 기회가 많아지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실업적인 요인이나 이런 경기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돌려 막기 하듯이 인턴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정상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온 영문과 학생이라든가 그런 인문계 학생들도 폴리텍대학으로 새로 입학하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갖추면서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려면 영어공부를 또다시 새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학교에서 충분한 영어가 안 됐을 때는 따로 공부를……

○**박준선 위원** 지금 폴리텍대학을 나온 양반들의 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호주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그쪽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전문 인력이 어학이 안 되거나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거기로 취업을 못 하고 여기서 실업

상태로 있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폴리텍대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말입니다. 일반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교육은 차후 문제로 하고 폴리텍대학에서 영어 인력을, 영어교육원을 대폭 확충해서 폴리텍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취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러려면 그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발상의 전환인데 이런 식으로 공기업에게 고용을 권고하고, 그런다고 해서 현재의 이 상황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까지 폴리텍의 경우에는 해외 취업을 위한 인력 양성은 사실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내에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었고 또 그 부분에서 본다면 기술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아주 높은 수준의 고급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의 노동 허가라든가 이런 걸 얻는 과정이 또 상당히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해외 진출을 위한 부분에 저희들 글로벌 인재 양성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외 취업을 위한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업을 위한 목적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인턴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요약해서 말하자면 결국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폴리텍대학에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기술교육과 아울러서 해외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런 분위기가 다른 일반 사립교육이라든가 일반 대학교육까지 퍼져 나간다면 우리 청년실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주해 온 해외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풍조가 됐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되어 버리고, 그렇다면 그런 시대적인 추이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시스템도 바뀌고, 특히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것은 21세기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맞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그렇지 않고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만들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장기적으로 몇 년을 앞두고 계획을 짜야지 이렇게 공기업한테 고용하라고 권고할 조항을 하나 두고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 취업이라고 그럴 때 단순한 노무직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IT 산업에 종사할 근로 청년들 훈련을 무역협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에게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어학훈련도 시키고, 보통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상당한 비용도 전제가 되는데 폴리텍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폴리텍이든 어디든 해외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취업을 위한 그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실업 해소하는 문제가 정부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에 맞추어서 정부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폴리텍대학을 내가 애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아니고 개인의 과제이고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외로 나갈 사람 나가고,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이라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갖추어진 교육시스템에 따라서 교육받게 전부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할 줄이나 기술을 제대로 배우나, 해외에서는 인문학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사람보다도 영어를 잘하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 그런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폴리텍대학 그리고 노동부 산하에서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회를 100개를 만들어도, 지역별 위원회 만들든 장애 무슨 취업센터를 만들든 결국은 기업

들이 필요한 인재 또는 인재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이것이 서로가 맞아야지, 궁합이 맞아야지 취업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내의 상황으로만 맞춰 놓고 본다면 얼마나 문제가 풀기 힘들습니까? 그러나 글로벌한 상태로 본다면 훨씬 더 기회는 넓어지고, 그렇게 인재를 만들자 이거예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박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노동부만이 아니라 전체 정부가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더구나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많은 취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동안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이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체가 된 것이 청년들입니다. 사실 상당한 부분은 우리 기업이 고용 능력을 넓히게 되면, 결국 채용당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취업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상당한 부분들이 해외에서라도 취업을 해서 개척해 나가겠다고 할 때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특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많지만 과거에 하던 대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게 됩니까? 예산과 법률 아닙니까? 법률을 아무리 만들어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하던 대로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누적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경기 구조 또는 경기 침체를 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기적인 침체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였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조가 실력 있는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다르게 쓸 것인가, 법률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할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폴리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폴리텍대학부터 일단 실질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늘려 가고, 당장 모든 폴리텍대학이 전부 다 영어교육시킬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지금 노동부에서도 10만 젊은이들 해외로 보내는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 것부터 노동부에서 해야지, 물론 교육부가 할 일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일단 폴리텍대학은 노동부 산하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드는 계기로 그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뒤에 계신 담당 실국장님도 유념해 듣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원진 위원** 김상희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의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근로 계약의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의 해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넣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위원님들께서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인물의 조문대비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30쪽 단서 부분과 그다음에 46쪽의 25조4호로 기재된 부분을 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원진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하되, 김상희 위원님의 의견을 조원진 간사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므로 이 동의를 받아들여도 록 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안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일 부 의견이 있었지만 간사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축 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8조부터 제18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제19조부터 37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제38조부터 42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3개 조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3건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 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22 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 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 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 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및 28항 2건의 산업안 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29항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 5건의 청 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40항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 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5건의 법률안과 청원 내 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청년실업해소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를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9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을 반영해서 체계와 자구수정을 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의 이의와 우리 위원회가 이 이의에 대한 동의를 더하여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시40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종료하지 못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장관님, 산재의료원이 산재환자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데 사실 산재의료원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손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산재의료원 자체가 하나의 일반 병원으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의료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뜻에서 일반 병원과 크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도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병원으로서의 운영 기능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아울러 산재의료원으로서 갖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산재의료원을 명

실 공히 산재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요양을 위한 체계로 확립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결국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면서 실제로는 그 병원의 기능을 더 개선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진 위원** 사실 어저께 3당 간사 간에 많은 토론도 거치고 노조위원장께서도 오셔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산재의료원 근로자분들의 입장은 의료전달 체계를 좀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부분하고 산재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기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쭙 보기를 ‘통합해서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다’, 사실 자기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또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봉사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산재의료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하루라도 빠른 통합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난번에 이 과정에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재의료원 이사장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의료원의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됩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산재의료의 전문 진료로서는, 재활과 요양을 위해서는 국내 어떤 병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화되고 전문화된 병원으로 육성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점에서 일부 좀 노동조합 쪽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통합 이후에 몇 개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내년 1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법 통과하고 6개월이 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동안에 노동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하셔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희덕 위원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청회도 거치고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어저께 노동조합과 3당 간사, 이렇게 고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막짚막하게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선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에 있어서 산재의료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재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산재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당장 긴급한 것을 요한다든가 할 때는 인근 병원을 가든지 일반 병원에 일단 가서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로 하는 단계가 되면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종전에 보면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자기들 병원 수익적 측면에서 놓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병원에도 등급을 정해서 그런 정도의 전문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데는 하게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산재의료원 쪽으로 와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환자들도 기꺼이 이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런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홍희덕 위원** 일부 산재의료원 중에서 진료과 폐지 문제의 하나로 대전 지역의 경우 다른 공공 의료기관이 없어서 대전 대덕구의회와 대전시의회에서 진료과 복원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듯싶은데, 대전중앙병원의 진료과를 복원하면 좋을 듯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산재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보다 진료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축성 있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4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11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환자들이 10만 명씩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많은데요,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재중앙의료원의 건립 등의 계획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안전국장이 잠깐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욱** 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 특히 어제 오신 노조 지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재의료원이 다른 공단에 대표적인 병원이 하나 있는 것처럼 산재의료원의 모든 전문적인 과목을 가장 최신 기술로 집약해서 치료할 수 있는 대표 병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통합추진단에서 통합되었을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매달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하나로서 장기적인 산재의료원의 새로운 비전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특화병원을 하나 설치하는 문제도 같이 포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지막으로 노동부가 추진 중인 산재환자 간병현물급여서비스 제도가, 08년 4월부터 인천중앙병원에서 산재환자 간병인현물급여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산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위기 하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노동부가 산재환자 간병현물급여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재환자 간병현물급여서비스 부분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향후 간병료 지급 기준을 개선해서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희덕 위원** 이것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에 대한 결정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건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답변을 국장이……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의 통합 부분은 현 정부의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작년 8월에 이미 확정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8월 26일 날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통합하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통합을 하는 건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확정된 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재운 위원** 통합을 결정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산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산재의료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산재의료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통합하는 겁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아닙니다. 그것은 확정된 결과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스스로 그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당연히 통합 대상인 기관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한 것은……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연구용역을 했다든가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든가……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내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통합 법안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자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 증거를 반드시 연구용역 같은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김재운 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5월에 나온다는 얘기를, 통합의 효과라든가 통합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게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아니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 과제가 통합운영 로드맵이라든가 의료원의 역할·기능 재정립, 이게 통합한 이후의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렇습니다. 발전 모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그전에도 통합에 대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글썄, 그 자료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되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기관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미 존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래로 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운영 방향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전문가적 견해를 많이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에 관해서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그것은 현실화된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견 조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산재의료원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통합한다, 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통합한다, 뭔가 조금 이해가 덜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재의료원을 산재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와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거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이게 정말 절실한 이유,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납득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법을 통과시키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뭐랄까요 대체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산재의료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환자들에 대한 진료랄까 또는 산재환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등등을 담당하고 있는 1차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독립적으로 산재환자와 무관한 하나의 일반 병원적 관점에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으로서도 제대로 안 되니까 본래 취지로 돌아가지, 단순히 상이한 두 기관을 합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본래의 취지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서 좀더 통제하에서 산재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통합운영 로드맵 및 의료원의 역할·기능 재정립 하는 용역 결과는 5월 31일 날 나오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기는 다음 달 중하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4월 중하순 정도예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5월이요.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재의료원 통합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작년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이미 이게 현실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재의료원 구성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의료원이 지금 통합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를 계속 이렇게 끌여가는 것은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더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구성원들도 받아들이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4월 개정이 안 되고 천생 6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월에 연구용역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산재의료원 구성원들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자들, 또 우리나라의 높은 산재율을 생각할 때 뭔가 산재의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해서 그 이후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지적들과 더불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산재전문단체들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노동자들과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산재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그리고 통합 이후의 바람직한 산재의료 운용방안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재의료병원이 9개가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다고 해서 병원 기능에 당장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고 역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위한 방안은 자꾸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것보다 좀 추진돼야 할 것은 추진되고, 더구나 특히 우리 국회 환노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산재의료원 의료 기능이 제대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

시기 때문에 통합절차를 추진시키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지적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경우에 늦춰지는 것은 단지 기간이 늦춰질 뿐이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탁은 빨리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일들이 더 신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재의료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과 시점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구성원들, 그리고 산재전문단체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어저께 산재의료원의 노조위원장께서 오셨는데 운영위원회를 그저께 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열네 분 중에서 열세 분이 조속한 통합을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감 때 말이지요 사실은 산재의료원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하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보고 했지 않습니까?

의료원 원장님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님도 지금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국감이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통합의 문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산재 환자들한테 가거든요.

저는 어저께 노조위원장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이라도 통합을 빨리 시켜 달라, 그리고 통합 이후에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통합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현장의 얘기를,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절실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명분에 묶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합의 문제를 미루면 실질적으로 거기의 환자들한테 돌아가는 영향은 굉장히 큼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용역의 문제는 통합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용역을 맡긴 것은 통합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

에 저는 사실은 어제 대체토론을 안 했지만, 오늘 대체토론을 하지만 간사 간 협의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노조위원장까지도 불려서 그분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서, 그분의 뜻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통합을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재윤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대체토론을 마지막으로 통합의 문제는 좀 종결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끌고 가면요 그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산재 환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좀더 산재의료원에 대한 발전방향, 의료 전달체계의 준비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국감을 열더라도 통합하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통합의 문제만큼은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두아 위원님!

○**이두아 위원** 제가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산재의료원 산하에 있던 병원들이 다, 의료기관 이런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가고, 또 수정안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것을 보니까 통합 후의 용역작업에서는 필요하다면 사실 산업재해 같은 것은 그냥 병원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좀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연구기관 같은 것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조속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리고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이것의 조항을 보니까 기존의 법안에서는 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이 33조를 근거로 해서 산재의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가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산재의료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만약 이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 민법 중에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산재의료원이 민법 중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이 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관되게 준용되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재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일관된 법 적용을 예측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은 재단법인에서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복지공단은 별도의 법이 없이 산재보험법에서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을 통합하는 이유가 법상 위치의 차이 또는 지배 받고 있는 중요한 법률의 원리가 서로 상치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목적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두아 위원 아니,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다만 지금 지적하신 점에서 상당히 실익성이 있으신 말씀은 뭐냐 하면, 합쳐지게 되면 지금 우리 의료원은 기업회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재정적자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해마다 적자 보전의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예산 싸움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원칙으로 다루는 병원인데 산재 환자에게서 과연 수익성을 크게 기대해도 좋은 것이냐라는 이념적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단은 출연기관이 되기 때문에 출연기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다른 회계를 쓸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단기적인 재정적자 내지 수입의 흑자 이런 부분을 갖고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예.

그럼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그 용역을 거치시면, 아까 여기 새로 수정한 부분을 보면 의료기

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작업을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연구기관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지금 그 의료원 부설로 이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재활공학 연구소라고 있고요, 또 폐질환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33조에…… 종전에는 직업병 연구,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죽 열거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그냥 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이라고만 묶은 이유는 그 속이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두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쭙 보고 싶은 것은 김재윤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작업을 거치면 거기에서 좀더 통합된, 발전된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물론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좀더, 그냥 산재의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의료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공익적 요소가 더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작업에서 이러이런 게,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든가 산재와 관련된 이런 모델이 용역작업을 거쳐서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소 말고요 용역작업을 할 때 특별히 이런 공익성을 고려해서 산재의료원, 지금 재단법인의 규정 준용을 받는 산재의료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용을 받는 이런 공익적인 요소가 더 강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산재의료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연구기관이 좀더, 그러면 공익적 모델이나 여기에 관련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연구기관이 좀더 용역작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발전적인 게 있다라고 저희를 좀 납득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연구용역에서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의료원이 독립적인 법인회계를 하다 보니까 단기

수익성에 골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의료원은 계속, 누구든지 산재가 발생하면 나는 산재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선호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해서 할 수 없이 병원이 계속 적자 부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환자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 환자를 받으려면, 다른 일반 병원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가가 좀 낮게 적용되는 종합병원을 희망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통합된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내에서의 산재의료원의 위치를 재정립하면서 이제는 수입·지출에 크게 의존하기보다는……

○이두아 위원 부담이 없어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욱 예, 정말 산재 환자에게, 특화된 종목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최고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재활 기능을 좀더 특화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재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자, 그러면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노동부의 입장, 또 그것을 이해하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님들 입장, 또 조속한 통과로 인한 의료 질 서비스 저하가 있을까 염려하시는 위원님 입장 다 함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 통합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빨리해서 오히려 산재의료원의 업무를 더 원활히 돕는 쪽이 좋을지, 아니면 통합 그 과정 속에서 통합 이후라도 의료 질 서비스 저하가 없게끔 좀더 용역 검토 결과가 나온 후에, 다 검토한 다음에 국회가 결론을 내 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시점에 관한 의견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체토론 할 때 장관님을 대신한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부가 연구용역 의뢰를 한 적은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 노동부에서는 이미 1월 12일날 산재보험과장이 직접 연구용역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3월 2일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에서 용역 중간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사실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료 서비스 질 저

하의 문제와 재활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말 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욕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산재의료 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반병원하고 경쟁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산재의료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또 재활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죠. 지금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정말 의도하는 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의견 노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 최종 워크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통합 이후의 운영모델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최종결과가 나온다 예정이 돼 있고 또 그 주제 자체가 통합 이후 의료 질 서비스 저하의 문제와 재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가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기왕에 문제 제기 됐으니까 그것을 좀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오늘 내일 사이에 다룰 문제가 아니고 5월 초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국회에 주십시오. 보고서, 우리가 그다음 회의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원진 위원 좀 말씀 드릴게요.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노동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산재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산재의료원이 재단법의 구속을 받으니까 75%의 수익률을 올려야 되고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 가게 되면 50%의 수익률, 그것은 사실 공익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사실은…… 우리가 작년 국회 국감 때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 4월 국회 전에 모든 결 다 끝을 내고 4월 국회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해야 합니다. 물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다른 용역이지만 노동부의 부실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잘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대체토론을 실시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의 사회적 영향과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늦은 시간까지 세심하게 보완하여 주신 조원진 간사님, 김재운 간사님, 권선택 간사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되어 공공 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요건을 폐지하고 계속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인력 활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 사항은 향후 제도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여 나가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법률의 하위 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부 소관 법률안 2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오

늘 의미 있는 것은 청년고용촉진에 대한 시의성을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준비까지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의미 있는 법안을 생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법안이 본 의도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이러한 법안 처리 실적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특히 3당 간사 위원님들의 불철주야 노고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 성 천	권 선택	김 상 희	김 재 운
박 준 선	이 두 아	이 화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추 미 애	홍 희 덕	

○청가 위원(1인)

박 대 해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 관	이 병 욱
기 획 조 정 실 장	문 정 호
자 원 순 환 국 장	정 연 만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윤 승 준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오 중 극

노동부

장 관	이 영 희
산 업 안 전 보 건 국 장	정 현 욱
기 상 청 장	전 병 성

【보고사항】

○의안 회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4. 16 박상돈 · 김창수 · 홍재형 · 김성곤 ·
임영호 · 박은수 · 이인기 · 노영민 · 주승용 ·
김성순 · 심대평 · 김용구 · 이명수 · 박선영 ·
이진삼 · 이상민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
의)**

(2009. 4. 16 조영택 · 전병헌 · 이용섭 · 양승조 ·
이종걸 · 강기정 · 우제창 · 안민석 · 천정배 ·
서갑원 · 김영록 · 김재균 · 김창수 · 장세환 ·
김용구 · 변재일 · 김동철 · 김상희 · 최철국 ·
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7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
의)**

(2009. 4. 17 주성영 · 유승민 · 신영수 · 배영식 ·
강석호 · 황우여 · 정두언 · 김정훈 · 안홍준 ·
김충환 · 최병국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4. 17 임두성 · 김소남 · 이성현 · 양정례 ·
유성엽 · 임동규 · 윤석용 · 정해걸 · 이인기 ·
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0일 회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09. 4. 20 변재일 · 양승조 · 홍재형 · 강봉균 ·
오제세 · 김중률 · 우제창 · 주승용 · 김상희 ·
노영민 의원 발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2009. 4. 20 정부 제출)

이상 2건 4월 21일 회부됨